

산재보험의 법률상담 2

박 필 수 우리 협회 고문

Q 건설공사현장에서 타사소속 근로자의 인명구조작업중 산소부족으로 질식사한 경우(업무상)

A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담당하는 회사 근로자가 깊이 25m 집수정에서 작업을 하던 배관설비공사를 담당하는 타사소속 근로자들의 구조 요청으로 집수정에 들어가 타사소속 근로자의 인명을 구조하고 피재자 본인은 산소부족으로 인하여 질식 사망한 경우, 피재자가 위치한 1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돌발적 위급한 상황에 직면한 재해 당시 상황은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장소나 사람이 타회사소속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위난을 구하는 것은 피재자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였다 할 것이며, 또한 시간적으로 사업주의 지시와 승인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기대되는 구조행위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산심 1993. 10. 25 취소, 93-1244호).

Q 일과 후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화투놀이하다가 공사장 계단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경우(업무상)

A 신축공사현장 지하2층 작업장에서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작업시를 기다리던중 무료하여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화투놀이를 하였고, 그리고 오후작업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계속 화투놀이를 하던중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귀가하기 위하여 계단을 오르던중에 굴러 떨어지는 재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사 망인이 사적 행위로 사업장내에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더라도 사업장의 시설하자와 결합하여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서울고법 1993. 7. 16. 92 구35815).

Q 작업중단중의 대기시간동안 사내 공터에서 족구를 하던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업무상)

A 생산시설의 고장으로 작업을 할 수 없어 이를 수리하는 대기시간동안 사내 공터에서 족구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 비록 장소가 체육시설이 아닌 통로라 하더라도 작업시간중 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생산계장의 인솔하에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가능한 장소에서 행하여진 행위이므로

로 동 행위에 기인한 재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산심 1991. 9. 26 취소, 91-488호).

Q 비계공이 작업종료 후 현장에서 사용된 트레일러의 고장수리작업을 돕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A 비계공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육교빔(beem) 설치작업을 하다가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반장으로부터 당일 빔 운반에 이용한 2대의 트레일러 중 1대가 고장이 나서 수리 중인 현장에 가서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비계반장과 함께 도로변에 세워놓고 수리 중인 현장에 가서 반장은 빔 야적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가져오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가고 피재자는 차 뒷쪽에서 차량유도신호를 하다가 트레일러 기사로부터 플래시가 들어오지 않으니 반장의 승용차에서 플래시를 갖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반장의 승용차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향해 길을 건너 가다가 소속 불명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는 바, 비록 피재당시의 행위가 피재자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 이기는 하나 고장난 트레일러가 피재자의 작업과 직접 관련되는 장비일 뿐만 아니라 소속반장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한 행위이었음이 명백한 이상 동 행위는 소속근로자로서의 기대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피재자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산심 1992. 8. 31 취소, 92-690호).

Q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탈의실로 가던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업무상)

A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회사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탈의실로 향하다가 자전거의 체인이 벗겨지면서 넘어져 발생한 부상은 그동안 현장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여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공구 등을 가지고 건설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고 퇴근할 때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돌아와 옷을 갈아입은 뒤 퇴근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부상은 사업장내에서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중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산심 1992. 12. 28 취소, 92-959호).

Q 사업주의 승낙없이 퇴근 후 술취한 상태에서 작업장내의 휴식장소에 들어가 간이침대 설치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한 경우(업무외)

A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시간중에 본래의 업무인 금형 제작은 하지 아니하고 2층 다락에 설치할 사다리와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생산과장에게 발각되어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다리와 침대 설치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다시 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다락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점에 비추어 피재자의 사다리 및 침대 설치작업은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사적 행위 일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의사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급여청구를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대법 1994. 8. 23. 94 누 3841)

Q 직장에서 새벽까지 계속된 시간외 근로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하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업무외)

A 근로자가 직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통상근무를 한 데 이어 그

다음날 02:30경까지 계속된 시간외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퇴근하던 중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 마주오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증상을 입었다면, 이는 근로자가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상을 입었다면, 이는 근로자가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근로자의 부상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위 근로자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 1992. 2. 14. 91 누 6283).

Q 근로자들의 사적인 회식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업무외)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이른바 회식에 관련된 사고에 있어서도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지만, 그 회식이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의 사적이거나 자의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 1992. 7. 10. 92 누 6280).

Q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재해의 경우(업무외)

A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망인이 참가한 행사가 회사의 기숙사에 숙식하는 사람들만이 자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스스로 비용을 각출하여 마련한 행사이고, 또한 회사가 그 경비를 제공한다든가 인솔자를 보내어 참가자들을 통제할 바가 없어 회사 소유의 통근버스가 참가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 1992. 10. 9. 92 누 11107).

Q 출장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다니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업무외)

A 출장중에 입은 재해이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다니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는 망인의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고, 이는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이 승용차 운전중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반대방향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 1992. 11. 24. 92 누 11046).

Q 출근 도중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업무외)

A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는 안된다. 회사에 일찍 출근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를 타고 회사 부근 정류장에 내려 작업장으로 가던중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망인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대로 일찍 출근하게 되었고, 또 그와 같이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그의 집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하차하여 걸어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통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통근중의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 1993. 5. 11. 92 누 16808).

Q 작업 종료 후 통근버스를 타러 가던중 하수구에 빠져 부상을 입은 경우(업무상)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여 하는 등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근로자가 당일 작업을 마치고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통상 출입하여 오던 사업장 후문을 통하여 통근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가던중 하수구에 빠져 부상을 입은 경우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서울고법 1993. 11. 12. 93 9 12802).

Q 출장중 거래처와 업무협의차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고 음주상태에서 귀가하다가 길에 쓰러져 동사한 경우(업무상)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사망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인 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인 것이 아닌 한 그 업무협의차 저

녁식사 겸 반주를 하고 약간의 음주상태에서 귀가하다가 길에 쓰러져 동사(凍死)한 것은 출장용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동 판례에서는 망인이 평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취기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고 있음)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법 1994. 1. 13, 93 구 19933).

Q 야유회 행사 도중 실종되어 익사체로 발견된 경우(업무상)

A 환경미화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춘계야유회행사에 참가하여 관광하던중 실종되었다가 며칠이 지나서 인근 강변에서 이마에 약 2cm 크기의 열상을 입은 외에는 달리 외상없는 상태의 익사체로 발견된 사망재해의 경우,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관행으로 하는 야유회행사중에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법 1994. 6. 8, 93 구 20360).

Q 오토바이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업무외)

A 회사가 제공한 통근수단을 이용하기가 부적합한 관계로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였고, 오토바이에 회사가 발행한 출입허가증을 부착하였으며 업무수행으로 일시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하였거나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오토바이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 1994. 6. 14, 93 누 24155).

Q 작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회사차량으로 현장숙소에서 개인숙소로 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업무외)

A 굴삭기 운전기사가 중기작업시간 이후에 갑회사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었고 운전면허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갑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의 인부들과 함께 인근 시내에 가서 목욕을 한 후 현장숙소로 돌아왔다가 다시 개인의 숙소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이를 을회사를 갈음한 갑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갑회사에 의하여 제공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의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현장작업반장 등의 지시에 의하여 그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 인부들의 공사현장과 식당 사이의 출·퇴근을 하도록 하여 주고 자신의 출·퇴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개인의 편의적 행위로서 자의적 또는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 1994. 10. 25, 94 누 9498).

Q 건설회사 형틀목공팀장이 작업 후 퇴근하기 위하여 가설다리를 지나가다가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업무상)

A 공사현장내에 설치된 가설다리는 근로자들이 작업상 필요로 하여 설치된 다리로서 출·퇴근 및 식당통로로 이용하였으므로 동 가설다리는 사업장 시설물이라 할 수 있고, 동 시설물을 이용하여 퇴근하던중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피재자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산심 1994. 1. 26 취소, 93-1415호).